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 내규

제정	2017.12.20.
개정	2018.03.07.
개정	2019.01.28.
개정	2020.06.17.
개정	2024.01.0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삼일로창고극장의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03.>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설비는 스튜디오의 모든 제반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② 스튜디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06.17.>

제3조(대관대상 시설 및 이용용도) ① 스튜디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② 스튜디오의 부대설비는 대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며, 그 내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6.17.>

③ 스튜디오는 공연연습, 예술 관련 행사, 워크숍 등의 목적으로 대관한다.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제4조(대관시간) ① 대관시간은 사용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② 스튜디오 대관시간은 1일 4시간씩 3타임을 기본으로 하며, 대관시간 사이에 30분을 정돈 및 점검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③ 스튜디오의 세부 대관시간 및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④ 스튜디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01.03>

⑤ 설날과 추석 당일은 휴무일로 하며, 기타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여 대관공고 시 공지한다. <신설 2018.03.07.>

제5조(대관료) ① 스튜디오의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0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3.07.>
<개정 2024.01.03>

1. 협회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공동 주최, 기획, 초청, 후원 등에 사용하는 경우
3.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간에 대한 취재 및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기타 창작공간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대관료는 대관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사용 시작 일까지의 합산일이 7일이 안될 경우 대관승인서에 별도 명시한 날짜를 입금기한으로 한다.

제6조(대관절차) 대관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다.

1. 대관공고
2. 대관신청 접수
3. 대관심사
4. 대관승인 통보
5. 대관 계약

제7조(대관신청) ① 대관을 희망하는 자는 ‘대관신청서’ [별지 1]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03>

② 대관신청은 온라인접수, 방문접수로 한다. <개정 2018.03.07.>

③ ‘예술창작공간 대관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3.07.>

④ 스튜디오는 수시대관으로 운영되며 1회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03.07.>
<개정 2020.06.17.> <개정 2024.01.03>

⑤ 스튜디오 대관신청은 해당 대관 시작일 3개월 전 해당 월 1일부터 가능하며, 사용 시작일 기준 최소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말, 공휴일 미포함) <신설 2018.03.07.> <개정 2019.01.28.> <개정 2020.06.17.>

제8조(대관승인 심사) ① 대관심사는 ‘예술창작공간 대관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② 대관신청 내용이 삼일로창고극장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부서장이 대관을 승인 한다. <신설 2018.03.07.> <개정 2024.01.03>

③ 대관희망 시설과 일정에 대해 복수의 단체가 경합하는 경우 삼일로창고극장 운영의 효율성과 신청단체들의 만족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합 단체 간의 일정 조율을 통해 신청내용을 변경·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03.07.>

④ 경합이 없을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신청했을 경우, 신청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승인 할 수 있다. <개정 2018.03.07.> <개정 2024.01.03>

1. 삼일로창고극장 공연장 대관신청 승인 단체 및 개인
2. 협회와 공동주최 및 공동기획 프로그램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9.01.28.>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
2. 창작공간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3.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사용

제9조(대관계약체결) ① 대관승인 단체(이하 ‘대관자’)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하며, 대관승인 후 7일 이내 [별지2]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단, 제5조 3항에 따라 대관료를 납부한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② <삭제 2020.06.17.>

제10조(사용제한)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 5회 이상 누적 시에는 최종 행위일 이후 6개월 간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03.07.> <2024.01.03.>

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
2. 창작공간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3.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 종교 및 정치적인 목적의 사용

제11조(대관 변경 및 취소) ① 대관자는 ‘대관 변경 및 취소 신청서’ [별지 4]를 제출하여 계약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자가 대관 취소를 신청할 경우, 대관료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1.04.>

1.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 전 대관 취소 : 납부한 금액의 100% 반환
2.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 대관 취소 : 납부한 금액의 60% 반환 <개정 2024.01.04.>
3. 대관사용 시작일 이후 :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50% 반환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 납부한 금액의 100% 반환 <신설 2020.06.17.>

③ <삭제 2018.03.07.>

제12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① 대관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②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승인 또는 계약체결 후 대관주체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차후 대관 시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및 설비 변경금지) ① 대관자는 협회의 시설,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나 기재, 물품을 반입설치 활용할 경우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로부터 시설에 대해 사용승인 받은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단, 협회가 철거 시 설치물에 손상이 발생할지라도 이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대관자는 스튜디오 내에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06.17.>

④ 스튜디오 내에는 조리도구 및 조리 음식을 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06.17.>

제14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협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자에게 관리 의무의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예술창작공간 대관규정’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화학류, 기름류 등 인화물질을 반입한 경우
3. 피난 및 방화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할 때
4.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복구비용이 발생할 때

② 대관자는 스튜디오 내에서 현금이나 귀중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실 시 책임 일체를 이용하는 대관자가 져야 한다. <개정2020.06.17.> <개정 2024.01.03>

부 칙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3.07.>

이 내규는 2018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1.28.>

이 내규는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6.17.>

이 내규는 2020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1.03.>

이 내규는 2024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관시설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스튜디오 면적	65.6m ² (8m×8.2m)
---------	------------------------------

<별표 2> 부대설비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스튜디오 설비	냉난방기, 화장실, 샤워실(1실), 사물함, 정수기, 음향기기, 간이테이블, 의자
---------	---

<별표 3> 대관시간 및 대관료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사용목적	사용시간	대관료 (1타임, 단위:원)
공연, 행사	오전(09:00-13:00)	10,000
	오후(13:30-17:30)	20,000
	야간(18:00-22:00)	20,000
방송, 영화, CF	오전(09:00-13:00)	30,000
	오후(13:30-17:30)	50,000
	야간(18:00-22:00)	50,00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1회 대관신청 시 최대 30일까지 신청/사용 가능

<별표 4> <삭제 2018.03.07.>

<별지 1> 대관신청서 <개정 2018.03.07.> <개정 2019.01.28.> <개정 2020.06.17.>
<개정 2024.01.03>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신청서

※협회는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 신청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대관신청 처리 및 삼일로창고극장 대관 정보 안내, 현금영수증 발행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협회가 정한 보유기간에 따름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관신청이 제한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1. 대관신청자

단체(개인)명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번호	(*없을 시 대표자 혹은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기입)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용)		
소재지 주소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2. 대관신청 내용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공연연습 <input type="checkbox"/> 예술관련 행사 <input type="checkbox"/> 워크숍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르구분	<input type="checkbox"/> 연극 <input type="checkbox"/> 무용 <input type="checkbox"/> 음악 <input type="checkbox"/> 다원예술 <input type="checkbox"/> 시각예술 <input type="checkbox"/> 전통예술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 내용	(*자유기술, 200자 이내)				

3. 대관신청 기간

대관기간	20 ~ 20 (총 일)			
이용시간	오전 (09:00-13:00)	오후 (13:30-17:30)	야간 (18:00-22:00)	전일 (09:00-22:00)
	(회)	(회)	(회)	(일)

협회의 규정과 대관 신청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개인의 경우 성명) : (인/서명)
(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귀하

<별지 2> <삭제 2018.03.07.>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 계약서

한국연극협회(이하 "협회")와 ○○○(이하 "대관자")는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관개요)

- ① 대관시설 :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 ② 대관기간 : _____ ~ _____
- ③ 대관내용 : _____

제2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_____ 원이다.

대관시간		대관기간	대관회차(회)	대관료(원)
스튜디오	오전	09:00-13:00		
	오후	13:30-17:30		
	야간	18:00-22:00		
	전일	09:00-22:00		
합계				

②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1항의 대관료를 "협회"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대관자의 의무) ① "대관자"는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대관의 변경 및 취소) ① 대관내용 및 기간의 변경, 취소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대관 취소 신청접수 시 대관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배상책임) 대관기간 중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자에게 책임이 있다. 단, "협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진다.

제6조(적용규정) 삼일로창고극장 예술창작공간 대관규정 및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 내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7조(증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한다.

(협회)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
 (목동, 대한민국예술인센터) 10층 1006호

(대관자)
 주 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이사장 : 손 정 우 (인)

<별지 4> 대관 변경 및 취소신청서 <개정 2018.03.07.> <개정 2020.06.17.>
<개정 2024.01.03>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 변경 및 취소신청서

※협회는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변경/대관취소 신청 처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변경/대관취소 신청 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및 담당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협회가 정한 보유기간에 따름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대관변경 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1. 대관신청자

대관승인(계약)번호	제 호		
대표자(개인)명		연락처	

2. 대관변경/취소 내용

변경 전	대관일자	. . . ~ . . . (일간)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대관내용	
변경 후	대관일자	. . . ~ . . . (일간) (오전 회, 오후 회, 야간 회)
	대관내용	
변경/취소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삼일로창고극장 스튜디오 대관승인 건에 대하여

대관변경 대관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개인의 경우 성명) : (인/서명)
(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귀하